

[별표 1]

자연보존지구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

(제6조제1항관련)

구 분		규 모
공 공 시 설	관 리 사 무 소	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
	매 표 소	부지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
	탐 방 안 내 소	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
안 전 시 설		별도의 제한규모 없다.
조 경 시 설		부지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
휴양 및 편익시설	야 영 장	부지면적 6천제곱미터 이하
	휴 게 소	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
	전 망 대	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
	대 피 소	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
	공 중 화 장 실	부지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
교 통·운 송 시 설	도 로	2차선 이하, 폭 12미터 이하
	탐 방 로	폭 3미터 이하,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
	교 량	폭 12미터 이하
	궤 도·삭 도	2킬로미터 이하, 50인용 이하
	선 착 장	부지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
	헬 기 장	부지면적 4백제곱미터 이하